

미술저작물의 실내 촬영의 저작권법적 쟁점

The Display Right of Artistic Works and Panorama Doctrine

김인철

상명대학교

Kim, Inchul

Sangmyung University

요약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I. 서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복제, 배포, 대여, 전시, 공연, 공중송신,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저작물과 달리 미술저작물은 원본에 의해서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1] 위에서 언급된 권리들이 저작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영상저작물 제작이 증가되면서 감독들이 생각지도 못한 우연 또는 의도에 의해서 타인의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됨으로써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이론 및 판례들을 소개하여, 영상저작물 제작자 및 감독들이 영상저작물 제작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블루밍 광고사건^[2]

1.1 사실관계

미술작가인 원고는 OO호텔에 2002년에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매도하였다. 피고는 자사의 아파트를 광고하기 위하여 광고제작사에 의뢰를 하였으며, OO호텔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문제되는 광고동영상을 제작한 후에 TV를 통하여 방영하고,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원고는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림 1. 블루밍 광고

1.2 법원의 판단

피고는 OO호텔에 전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일반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법원은 피고는 광고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 등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하고,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개방된 장소”는 건물의 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건물의 내부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므로 본 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2. Roc 공정이용 사건^[3]

2.1 사실관계

유명한 현대 미술작가인 원고 Faith Ringgold는 피고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과 HBO가 제작한 “Roc”

라는 시트콤 드라마의 한 편에서 셋트 장식물로 이용된 자신의 저작물인 “church quilt”의 포스터 사진이 약 30분 중에 총 26.75초 정도 노출되어 방송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포스터 사진은 원고가 포스터로 제작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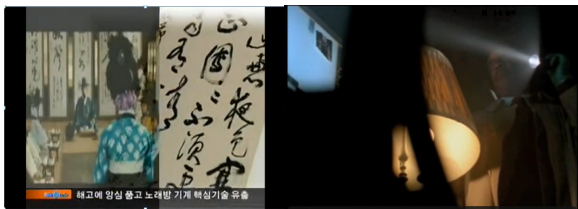


▶▶ 그림 2. Roc 장면

2.2 법원의 판단

1심법원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으로 저작권침해를 받지 않았지만, 2심을 담당한 제2항소법원은 공정이용 요건 4가지를 판단하면서 변형적(transformative)인 방식의 이용이 아니라 단순히 장식적인 용도이고, 26.76초를 영상저작물에 사용한 것은 미소침해(*de minimis*)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양이며, 자신의 저작물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용되도록 허락함으로써 1995년에만 \$31,500의 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2년에는 다른 시트콤에서 이용허락을 요청하였지만 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서 거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고는 잠재적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기타사례



▶▶ 그림 3. 황진이 Seven

영화 황진이 사건(4)은 제작사가 영화장면에 나오는 붓글씨의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화면에 무단으로 삽입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1억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후에 합의로 조정된 사건이고, 영화 Seven 사건(5)은 영화장면에서 사진작가의 사진 원판이 화면에 희미하게 노출되어 영화제작사에게 소송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영화장면에 나타나는 장면이 일반인이 인지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de minimis* 원칙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이다.



▶▶ 그림 4. 맨발의 기봉이 사건 장면

맨발의 기봉이 사건은 제작사가 이용하려는 음반제작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여 음반제작사와 협상을 하고 음반을 사용하였지만, 사실 이 노래가 녹음된 음반은 두 개의 업체가 제작하였고, 제작사가 승인받은 업체의 음반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음반이 삽입되어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으로 주의 부족으로 소송을 당한 사건으로 이후 합의로 해결하였지만 저작권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제작사는 상당히 고생을 하였다.

III. 결론

위에서 본 언급한 것과 같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감독들이나 제작사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무감각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항상 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끊임없이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ven과 같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저작물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최진원 미술 저작물의 전시와 파노라마의 자유, 정보법학회, 제12권 1호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나51230 판결
- [3] 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Inc., 126 F.3d 70 (2d Cir, 1997)
- [4] 김수형, [집중] 아차하면 저작권 침해 ... 문화계 몸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81175
- [5] Sandoval v. New Line Cinema Corp. 147 F.3d 215 (2d Cir, 1998)